

의안번호	2217767
의 퇴 인	박용갑의원
회 답 일	2026.7.23
추 계 번호	26B1722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
1	안 제13조 (정기점검의 실시)	다중이용 건축물, <u>공장</u>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8조 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.(제1항) <u>4의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<신설></u>	재량규정
3	안 제27조 (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)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, 용도,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[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(이하 “건축위원회”라 한다)에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]를 신청한 건축물(이하 “보강대상 건축물”이라 한다)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.(제2항) <u>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<신설>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3조 (정기점검의 실시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8조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	(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)	
3	안 제27조 (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)	

2. 상세사유

가. 정기점검 대상에 ‘공장’ 추가(안 제13조)

- 개정안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 ‘공장’이 추가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대상인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비용이 추가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은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공장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추계 대상을 현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하여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주체인 공장의 정기점검 추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나.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에 추가(안 제18조)

- 개정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추가하도록 하고 있어,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·장비 보강이 필요하고,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현재 점검·보강 대상이 되는 공장의 규모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불확정적이어서,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점검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재정분담 비율 등은 이를 토대로 산출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388-3735	jangwy93@nabo.go.kr

[참고자료]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

국토교통부 예산안사업설명자료

1. 사업 배경 및 목적

-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장수명화 요구와 신축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에 따라,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증대
- 지진, 화재, 붕괴 등 대형 재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의 안전점검 결과 및 도면, 이력 정보의 실시간 통합 관리 요구 직면
- 기관별·법령별로 분산된 건축물 정보를 건물 단위로 통합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, 지자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

2. 법적 근거 및 사업 주체

- 법령 근거: 「건축물관리법」 제7조(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)
- 사업시행주체: 국토안전관리원

3. 주요 시스템 기능 및 업무 프로세스

- 동 시스템은 「건축물관리법」에 따른 핵심 건축물 관리 제도를 전자적으로 처리·지원함
 - 건축물관리계획 수립: 관리자의 계획서 작성·제출부터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·승인(세움터 연계) 전 과정 전산화
 -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관리: 시·도 담당자의 점검기관 모집 공고, 신청서 검토 및 점검기관 명부 등재·확인 기능 제공
 - 건축물관리점검 지원: 지자체의 정기점검 대상(다중이용·집합건축물 등) 자

동 선정, 점검기관 지정 및 실시 통보, 점검기관의 결과보고서 제출·검토·승인 프로세스 운영

- 해체 및 멸실 신고: 관리자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요청,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의 해체계획서 검토의뢰 접수·회신, 해체공사 완료 및 멸실 신고 처리 기능 지원
- 기타 안전관리: 화재안전성능보강계획 등록 및 관리, 무량판 구조 점검 결과 등록, 점검 대가 산정 기능 등 제도 개정에 따른 특화서비스 지원

4. 2026년도 예산: 1,309백만원